



제428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보호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 금지〉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5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1.
3. 회부연월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 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 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 -----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 <u><신설></u>	6. <u>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u>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소요 사태 및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를 추가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을 통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을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 등의 경계로부터 100미터까지 지역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옥외집회·시위 등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 유발될 수 있는 수용자의 동요 및 소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 등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등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¹⁾에 따라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²⁾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와 제8조를 통하여 개정안이 의도하는

1)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생략)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교도소·구치소 등 인근에서의 소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또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의 발생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음.⁴⁾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신고서의 장소란에 교도소·구치소 명칭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집회 건수는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730건이고, 이 중 서울구치소가 647건으로 88.6%를 차지함.

<집회신고서 장소란에 교도소·구치소 명칭이 포함된 집회 신고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31.까지)	합계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송파구)	7건	1건	25건	1건	34건
서울남부구치소 (서울 구로구)	1건	-	-	7건	8건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31.까지)	합계
부산구치소 (부산 사상구)	-	1건	1건	-	2건
인천구치소 (인천 미추홀구)	1건	1건	-	-	2건
광주교도소 (광주 북구)	-	1건	-	-	1건
대전교도소 (대전 유성구)	1건	-	-	-	1건
울산구치소 (울산 울주군)	-	2건	-	-	2건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시)	97건	285건	143건	122건	647건
수원구치소 (경기 수원시)	2건	-	2건	-	4건
안양교도소 (경기 안양시)	-	1건	1건	-	2건
화성직업훈련소 (경기 화성시)	-	1건	1건	-	2건
여주교도소 (경기 여주시)	-	1건	-	-	1건
영월교도소 (강원 영월군)	-	-	1건	-	1건
공주교도소 (충남 공주시)	-	2건	-	1건	3건
대전교도소 지소 (충남 논산시)	-	1건	-	-	1건
전주교도소 (전북 전주시)	-	1건	-	-	1건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	-	1건	-	1건
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	-	1건	-	1건
창원교도소 (경남 창원시)	1건	-	-	-	1건
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8건	-	2건	2건	12건
제주교도소 (제주 제주시)	-	3건	-	-	3건
합계	118건	301건	178건	133건	730건

※ 자료: 경찰청

개정안의 개정대상 조항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87, 발의일자: 2024년 11월 22일), 대통령집무실 등 특정장소를 추가하는 개정안(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67, 발의일자: 2024년 11월 21일)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경찰청은 현행법이 헌법기관과 외교기관에 한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정할 뿐 그 밖의 행정기관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고 외부와 단절된 교정시설의 특성상 그 경계 외곽까지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는 국가보안시설 관련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